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junghope2@korea.kr

2) 주소 : (우)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10동 6층

3) 팩스 : 044-202-3947

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5) 통합입법예고센터 : 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(전화 : 044-202-301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(<http://www.lawmaking.go.kr>) “통합입법예고”와 보건복지부 (<http://www.mohw.go.kr>) “정보→법령→입법·행정예고 전자공청회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● 환경부공고제2020-847호

관보제19847호(2020. 9. 29)에 게재된 “환경부공고제2020-824호(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)”는 재공고 예정으로 취소함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7일

환 경 부 장 관

● 환경부공고제2020-848호

「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」에 관한 환경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,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7일

환 경 부 장 관

「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」 고시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 양도·양수시 전달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에 대한 승인(2021년 1월 16일 시행)에 관하여 승인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화학물질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화학물질정책과
- 전자우편 : nkhwang@korea.kr
- 팩스 : 044-201-6783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(전화 044-201-6783, 전자우편 nkhwang@korea.kr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환경부공고제2020-852호
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함) 제4조 제1항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(2021년 ~2025년)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·확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7일

환 경 부 장 관

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

1. 수립 근거 및 목적

「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함)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- 가.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들에 대한 제3차 계획기간 배출권 총수량을 약 30억 8,226만톤으로 설정
- 나.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100분의 10을 유상으로 할당하되, 무역집약도 및 비용발생도를 고려하여 일부 업종(69개 중 28개)에 대해서는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
- 다. 배출권 비용을 급전순위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하여 전환부문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수준을 점진적으로 강화
- 라. 배출권시장의 시장기능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증권사 등의 배출권시장에 참여·거래를 허용

3. 기타 사항

수립·확정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전체는 환경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e.go.kr>)에 게시

●고용노동부공고제2020-400호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7일

고용노동부장관